

# 부 의 안 건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
----------	-----

발의연월일: 2023년 1월 30일  
발의의원: 문재호 의원, 김민숙 의원  
김해련 의원  
찬성의원: 원종범 의원 등 5명

제안이유

- 개발사업 및 도시 조성사업 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우수유출을 절감하고 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 나.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다.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개정조례안: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7제3항 및 제33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2

- 현행 조례

##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와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제1호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를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종전의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① 시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1항제28호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제1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중 폭 8미터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다만, 고가도로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단,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 다.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1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설치사업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 ③ 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 결과를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

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공간 또는 시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8조와 제9조”로 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 그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연재해대비)**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가뭄재해대비)** 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빗물관리시설 및 지연 배출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침수 방지)** 시장은 돌발홍수로 인한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단지 및 도로측구에 원활한 빗물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u></p> <p>1. (생략)</p> <p>2. (생략)</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u>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u></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 종합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u>&lt;신설&gt;</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빗물관리시설</u>”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현행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음)</p> <p>나. (현행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음)</p> <p>2. “<u>저영향개발</u>”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와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p> <p>3. (현행 제2조제2항과 같음)</p> <p><u>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u></p> <p>③ ----- ----- -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 --.</p> <p><u>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①</u> <u>시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u></p>

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1항제28호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제1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중 폭 8미터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다만, 고가도로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단,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1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설치사업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③ 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 결과를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

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제9조(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제22조 · 제43조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대상시설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시장이 가뭄에 취약  
한 도서지역 등 빗물관리시설  
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  
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  
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  
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생략)

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공간 또는 시  
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  
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  
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  
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  
는 시설

제10조(개선권고) ----- 제8조  
및 제9조-----

---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  
-----  
-----  
-----.

1. (현행 제9조제1호과 같음)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 그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3. (현행 제9조제3호과 같음)

제11조(자연재해대비)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가뭄재해대비) 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빗물관리시설 및 지연배출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침수 방지) 시장은

	<p><u>돌발홍수로 인한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단지 및 도로측구에 원활한 빗물 배출이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u>제10조</u> (홍보 등) (생략)	<u>제15조</u> (홍보 등) (현행 제10조와 같음)
<u>제11조</u> (위원회의 설치) (생략)	<u>제16조</u> (위원회의 설치) (현행 제11조와 같음)
<u>제12조</u> (위원회의 구성) (생략)	<u>제17조</u> (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12조와 같음)
<u>제13조</u> (간사) (생략)	<u>제18조</u> (간사) (현행 제13조와 같음)
<u>제14조</u> (위원장의 직무) (생략)	<u>제19조</u> (위원장의 직무) (현행 제14조와 같음)
<u>제15조</u> (위원회의 회의 등) (생략)	<u>제20조</u> (위원회의 회의 등) (현행 제15조와 같음)
<u>제16조</u>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생략)	<u>제21조</u>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현행 제16조와 같음)
<u>제17조</u> (수당) (생략)	<u>제22조</u> (수당) (현행 제17조와 같음)
<u>제18조</u> (시행규칙) (생략)	<u>제23조</u> (시행규칙) (현행 제18조와 같음)

[별지 서식]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치 위치	생년월일			
설치 완료일				
준공증인일 (사용증인일)				
설치 시설	빗물 침투시설	시설 내역		
	빗물저류 (저장)시설	설치 개소	설치면적 시설규격	
		용량	지붕( ), 벽면( ), 기타( )	
	빗물 이용시설	재질	집수면적	제곱미터
		시설 내역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b>설치금액</b>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 다.				
<b>고양시</b>		년	월 일	
<b>장</b>		신고인	서명 또는 인	
<b>귀하</b>				
붙임	1. 빗물관리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서류	2. 설치 전·후 사진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

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우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7. 3. 29.>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

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투시설
  - 가. 침투통
  - 나. 침투측구

- 다. 침투트렌치
- 라. 투수성 포장
-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 2. 저류시설

-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 나. 운동장저류
- 다. 공원저류
- 라. 주차장저류
- 마. 단지내저류
- 바. 건축물저류
-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현행 조례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추진) 시장은 호우 시 빗물의 집중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 시)에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등 건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2조·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시장이 가뭄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9>

1.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양시의회 의원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빗물관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하거나 해촉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